##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(추미애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0121 발의연월일: 2025. 4. 25.

발 의 자:추미애·전재수·신영대

이성윤 • 부승찬 • 김동아

한병도 · 김기표 · 박선원

박용갑ㆍ정성호ㆍ송옥주

한정애 · 전종덕 의원

(14일)

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재 병영생활에서의 군인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의무 사항이 규정되어 있지 않음.

그런데 최근 군용트럭 교통사고로 병사들이 사망하는 등 인명사고가 발생한 가운데, 그 주요 원인으로 노후된 군용차량과 좌석안전띠미설치 등의 문제점이 지적됨에 따라 군용차량의 안전 확보를 위한조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.

특히, 국민청원을 통해서도 노후된 군용차량에 대한 불용 처분과 모든 군용차량에 좌석안전띠 설치 및 철저한 관리가 요구되는 등 법안 개정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나타나고 있음.

이에 군인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책무를 명시하여 군인들이 안전한 병영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17조의4 신설).

법률 제 호

##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법률 제20539호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7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7조의4(안전권의 보장) 국가는 병영생활에서 군인의 생명 및 신체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
## 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| 현 행                 | 개 정 안               |  |  |
|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|--|--|
| 법률 제20539호 군인의 지위 및 | 법률 제20539호 군인의 지위 및 |  |  |
| 복무에 관한 기본법          | 복무에 관한 기본법          |  |  |
| 일부개정법률              | 일부개정법률              |  |  |
| <u>&lt;신 설&gt;</u>  | 제17조의4(안전권의 보장) 국가는 |  |  |
|                     | 병영생활에서 군인의 생명 및     |  |  |
|                     | 신체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     |  |  |
|                     | 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    |  |  |
|                     | <u>다</u> .          |  |  |